

아감벤 철학에서
정치의 구성요소로서의 내전 개념

강선형
성신여자대학교

아감벤 철학에서 정치의 구성요소로서의 내전 개념

강선형

성신여자대학교 창의융합교양대학 창의융합학부 초빙교원

주제분류 현대철학, 사회철학, 정치철학

주제어 아감벤, 내전, 호모 사케르, 예외상태, 다중, 무위의 공동체

요약문 이 논문은 아감벤이 어떠한 방식으로 내전 개념을 정치의 구성요소로서 다루고 있는지 밝히고, 내전 개념을 예외상태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며, 아감벤이 나아가고자 하는 무위의 공동체를 어떻게 내전 개념과 함께 사유할 수 있는지 보인다. 이를 통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과 테러, 폭력을 옹호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내전 개념을 현대 정치의 구성 요소로 사유할 수 있는지 드러낸다. 내전은 예외상태를 선포하는 주권자의 은유로서 작동하면서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외상태를 선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는 언제나 유위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유위의 공동체란 '분열되지 않는 인민의 창출'과 같은 나치즘이 목표로 했던 공동체와 같은 것이다. 반면 내전 개념을 현대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로서 사유한다는 것은 무위의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무위의 공동체란 끊임없는 분열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래서 정체성을 부여할 수 없는 공동체를 말한다. 아렌트가 말하는 '난민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논문은 새로운 공동체를 사유하는 아감벤의 논의가 현실화된 폭력을 옹호하지 않으면서도 내전 개념을 근본 요소로서 사유할 수 있음을 보인다.

I. 서론

아감벤의 『내전』은 '호모 사케르 연작' 가운데 『호모 사케르』(1995), 『예외 상태』(2003) 다음에 오는 II-2권에 해당하는 책이지만, 다른 모든 연작 시리즈가 출간된 후인 2015년에야 출간되었다. 그런데 이 『내전』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논문, 「스타시스」와 「리바이어던과 베헤못」은 모두 2001년 프린스턴대학교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하고 보충한 것이다. 이 14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은 실제로 아감벤이 이 책을 '호모 사케르 연작'으로 취급할 것인지, 더 나아가 이 논의가 과연 유의미할 것인지 깊이 고민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실제로 그는 『내전』을 출간하며 자신의 논의가 "과연 어느 정도나 여전히 적용 가능한지 아니면 그와 반대로

우리 시대가 전 지구적 내전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한 [역사적] 사태가 이제 근본적으로 의미를 바꾸고 있는지의 여부”를 독자들의 결정으로 남겨 둔다(Agamben, 2017: 23). 왜 그는 내전 개념을 현대 정치의 구성요소로서 다루는 이러한 작업에 대해 그 적용 가능성을 고민해야 했는가? 이는 2001년이 9·11테러가 일어난 해이며, 두 논문이 발표된 프리스턴대학교 세미나는 그 직후인 10월에 발표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더 의아한 일이다. 더 조심스럽고 긴급하게 논의되었던 내전 개념이 현재 그 유의미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데리다 역시 9·11테러 직후 10월 22일에 있었던 보라도리와의 대담, 이후 2003년 『테러 시대의 철학』으로 출간되는 대담에서 테러리즘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데, 이 역시 그 긴급성에 비해 급진적인 주장들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테러리즘이라는 것이 과연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인지 물으며, 알제리, 북아일랜드, 코르시카,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단순히 테러 행위로 정의할 수 없는 행위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9·11테러를 최대한 매체화하는 일은 테러리스트들과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자 하는 자들 모두 원하는 일이었다고까지 말하기도 한다. “진짜 ‘테러’는 세계무역센터의 파괴나 펜타곤에 대한 공격보다 더한 것, 수천 명에 달하는 인명의 살해보다 더한 것입니다. 진짜 ‘테러’는 이 테러의 이미지를 노출하고 이용하는 데, [테러의] 표적 스스로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해진] 이 테러의 이미지를 노출하게 하고 이용하게 하는 데 있었으며, 바로 이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Derrida, 2004: 199-200). 이러한 입장은 때로는 명백한 선제공격 행위를 무색하게 만들고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시되며, 아감벤 역시 두 편의 논문 발표 이후 그러한 문제들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내전이라는 개념을 정치의 구성요소로서 놓는 것은 분명 그것을 확산되어야 하는 긍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그러한 이유로 아감벤은 2003년 발표된 『예외 상태』에서는 내전이라는 개념을 중심 개념으로 삼기보다 예외상태의 선포의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된 개념으로 다룬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아감벤이 어떠한 방식으로 내전 개념을 다루고 있는지 밝힌 후, 이를 예외상태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것이며, 이를 통해 아감벤이 나아가고자 하는 무위의 공동체를 어떻게 내전 개념과 함께 사유할 수 있는지 보이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전은 공동체를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에 따라 주권자의 은유로서 작동하기도 하고, 무위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도 한다. 아감벤에게서 중요한 것은 내전을 분열되지 않는 인민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분열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즉 역설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끊임없는 분열로 이루어진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감벤의 내전에 대한 사유 자체는 9·11이후 변화한 테러의 형태와 관련하여 그 스스로가 표현한 우려와 숙고만큼 문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데리다가 9·11테러를 숙고하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 한 말로 먼저 아감벤이 표현한 우려에 대해 대신 답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철학자’란 ‘이해하기’와 ‘정당화하기’를 구별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론을 모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전쟁’이나 ‘테러 행위’에 이르게 되는 일련의 연쇄를 결코 정당화하지 않으면서

도 기술하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 사실상으로는 그것들을 비난하고 다른 연쇄들을 창안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테러 행위를 발생시킨 상황, 심지어 그것을 정당화시켰던 상황을 무시해버리지 않고서도 테러 행위들(국가의 것이든 아니든)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수 있습니다(Derrida, 2004: 196).

II. 정치의 구성요소로서의 스타시스(stasis) 개념

아감벤은 내전 개념을 전개하기 전 『호모 사케르』에서 두 생명 개념을 구분한 바 있다. 하나는 단순한 자연 생명으로서 조에(zōē)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적으로 고려된 생명으로서 비오스(bíos)이다. 그리고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오이코스(oikos)의 영역과 폴리스(pólis)의 영역이라는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배하는 사람의 수의 차이만 있을 뿐 노예의 주인이나 정치가 사이의 차이가 없다는 방식으로 사유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일상의 삶을 위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동체”가 오이코스이며, 하루하루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더 큰 공동체가 형성되는 가운데, 폴리스는 그 가장 최고 단계인 “모든 자족의 요건을 극한까지 갖춘 완전한 공동체”라고 말한다(Aristotle, 2023: 31-32; 1252b). 그리고 이 완전한 공동체는 “사람의 삶(zen)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은 잘 삶(eu zen)을 위해서다” (Aristotle, 2023: 33; 1252b). 아감벤이 주목하는 것은 여기서 단순한 삶으로서 생명과 공동체가 목적으로 하는 잘 삶, 즉 정치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고려되는 생명이 구분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생명인 조에는 늘 ‘잘 삶’으로서 고려된 비오스가 아니라는 방식으로 배제되는데, 이때 조에는 배제되는 생명이라는 방식으로 비오스의 반대 극에 놓임으로써 이미 포함되어 있다. 조에는 이러한 포섭을 통해서만 정치적 영역에 들어설 수 있으며, 비오스화 되지 않으면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배제가 정치적 영역에 바로 그 배제를 통해 포함된 조어를 폭력에 노출시킨다.

아감벤은 그리스어로 내전을 의미하는 스타시스(stasis) 개념을 이러한 오이코스과 폴리스 영역을 뒤섞어 놓는 플라톤의 『메넥세노스』의 구절을 통해 설명하는데, 바로 ‘내전이 발발했다(oikeios polemos)’는 구절이다. 외적 전쟁을 의미하는 ‘polemos’와 가정의 영역을 의미하는 ‘oikeios’가 합쳐져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내전’이 의미하는 바가 “장차 화해하고 언제까지나 전쟁을 하지는 않으려는 자들” 사이의 전쟁이라는 것, 그래서 상대를 예측하고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제정신이 들게 해 주려는 것”임을 의미한다(Plato, 2005: 359-360; 470e-471a). 이러한 플라톤의 구절은 오이코스의 영역이 화해를 위한 폴리스 내적인 전쟁과 폴리스 간의 전쟁을 구분하게 해주는 영역임을 의미한다. 내전은 항상 오이코스과 내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감벤은 오이코스과 “동일한 본성을 가진 스타시스”라고 말하기도 한다(Agamben, 2017: 40). 그렇지만 내전은 단순히 오이코스 ‘안에’ 있고, 오이코스의 영역과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다. 폴리스라는 국가의 성립이 가능한 것은 친족관계의 확대를 통해 폴리스를 또 다른 오이코스로 만듦으로써이기 때문에, 내전은 폴리스와도 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수밖에 없다. 플라톤이 한 국가의 사람들은 “자기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을 형제나 누이로서,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로서, 아들이나 딸로서, 또는 이들의 자손이나 선대의 윗분들로서 만난 것으로 생각할 것”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Plato, 2005: 345; 463c). 이러한 방식으로 오이코스과 폴리스는 늘 뒤섞인다.

오이코스와 폴리스의 관계는 조예가 늘 비오스화되면서 동시에 배제되는 것처럼 오이코스가 폴리스화되면서 동시에 배제되는 관계였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정치가(politikos)와 가사 관리인(oikonomikos)에 대하여 그 역할은 같고 피지배자의 수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에서 잘 알 수 있다.¹⁾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단순한 ‘삶’은 늘 ‘잘 삶’과 양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질적인 의미에서 구분되며, 단순한 ‘삶’이 정치적으로 가치를 가지지 않는 생명이라는 방식으로 ‘잘 삶’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처럼, 친족관계가 이루는 오이코스의 영역은 정치적 가치를 지니는 시민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방식으로 늘 폴리스의 영역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이코스의 끊임없는 폴리스화의 관계가 아니라 양자가 끊임없이 뒤섞이면서 구분 불가능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 내전이다. 내전이 일어났을 때 오이코스의 영역은 친족관계로 이루어진 영역으로 남아 있지 않고 ‘시민’들 사이의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정치화되는 반면, 폴리스의 영역은 더 이상 플라톤이 말하는 것과 같이 화해를 위해 싸우는 확대된 친족관계와 같이 비정치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전은 단지 오이코스 내부에 있는 것도 아니며, 오이코스가 폴리스화됨으로써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내전은 오이코스와 폴리스가 구분 불가능해질 때 그 영역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전은 정치에 항상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구성요소이다. 폴리스와 오이코스가 구분되지 않는 경계 영역을 구성함으로써 어떤 영역이 폴리스의 영역이고 어떤 영역이 오이코스의 영역인지 구분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솔론의 법이 잘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솔론의 법이 “도시에 내분이 일 때 무기를 들어 양편 중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명예를 주거나 도시국가 사무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한다(Aristotle, 2002: 59). 이는 폴리스 안에서 내전이 자주 일어났으나 이를 해결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솔론이 도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에서 나타나는 것은 내전 참여 여부에 따라 한 시민을 폴리스의 영역에 있을 자격을 주거나, 오이코스의 영역에만 머무르게 한다는 것이다. 즉, 한 존재가 정치적 생명인지 비정치적 생명, 즉 단순한 생명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내전이다. 시민이 시민답게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존재는 단순한 생명에 머물고, 그렇게 폴리스의 영역에서 ‘배제’됨으로써, 즉 정치 영역에 참여할 수 없다는 방식으로 규정됨으로써 ‘포함’된다. 내전은 이러한 방식으로 두 영역 사이의 분리 불가능한 관계를 드러내며, 내전이라는 경계 영역에서는 비정치적인 생명이 정치화되고 정치적 생명이 친족관계처

1) 이와 관련하여 아감벤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폴리스’ 개념을 비판하고 자기 스승이 나라의 단일적 본성을 너무 멀리까지 밀어붙였다고, 급기야 나라가 집안이 되어버리고 마는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Agamben, 2016: 73-74).

럼 여겨짐으로써 탈정치화되어 두 영역이 구분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솔론의 법은 내전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정치적 권리를 빼앗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전이 끝난 뒤에는 내전 중에 있었던 행위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 대해서도 좋지 못한 과거 일을 캐서는 안 된다” (Aristotle, 2002: 88). 내전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의 정치적 의무였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를 다한 것일 뿐이다. 플라톤 또한 “내전 중에 싸움을 통해서 혹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먼저 공격을 시작한 쪽을 막아 내다가 죽인 경우에는 적을 죽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죄가 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Plato, 2018: 179; 9권 869c-d; Agamben, 2017: 41). 이로부터 내전은 폴리스에 항상 내재하고 있는 구성요소라는 점이 잘 드러난다. 내전은 폴리스의 영역이 형제 관계로 이루어진 오이코스적 영역과 같이 되고자 할 때, 또 반대로 오이코스적 영역의 관계들이 약화되어 정치적이 될 때 늘 새롭게 형성되는 경계이며, 이 경계 영역으로 인해 단순한 생명과 정치적 생명이 구분되고, 정치화됨으로써만 포섭될 수 있는 단순한 생명이 처하는 위험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은 그리스 시대 뿐만 아니라 현대의 정치 영역에서도 항구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아감벤은 이 내전의 형태가 오늘날에는 테러리즘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고 분석한다. 전 세계가 ‘공통의 집’ 처럼 여겨지고(폴리스의 오이코스화), 모든 생명은 인권이라는 방식으로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될 때(오이코스의 폴리스화) 내전은 ‘전 지구적 내전’으로서 테러리즘이 되는 것이다.

III. 내전과 예외상태

아감벤의 이러한 내전 개념은 그의 철학에서 또 다른 주요 개념인 예외상태의 지위와 동일하다. 내전이 오이코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이코스와 폴리스, 피에 의한 혈족 관계와 시민성 사이의 비식별역을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처럼(Agamben, 2017: 42), 예외상태 역시 “법질서 바깥에 있는 것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며, ... 내부와 외부가 서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식별하지 못하는 구분 불가능한 영역” 을 가리킨다(Agamben, 2009a: 52). 법질서로부터의 배제로 규정됨으로써 법질서에 포함되는 이 영역에서 조예와 비오스는 뒤섞이며, 이는 조예의 끊임없는 배제, 즉 정치적으로 가치를 가지지 않는 생명이라는 방식으로 조예의 전멸에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감벤은 『예외상태』에서 계엄 상태로부터 9·11테러까지 하나의 역사로 그려나간다. 먼저 헌법의 효력이 정지되는 계엄 상태에 대한 발상은 프랑스 제1공화국에서 나왔다.

헌법의 효력 정지라는 생각은 혁명력 8년 프리메르[3월] 22일자 헌법 제92조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 조항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무장 봉기나 소요가 일어날 경우 법률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대해 헌법을 효력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회가 정회 중이라면 효력 정지는 행정부의 법령에 의해 사전에 포고될 수 있다. 이때 의회는 같은 법령의 조항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소집되어야 한다’ 는 것이었다. 문제가 되는 도시나 지역은 헌법 바깥에 있는 것으로 선포되었다

(Agamben, 2009a: 20-21).

아감벤은 이러한 계엄 상태의 입법화가 헌법 질서 자체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결과들을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이후 1848년 법률을 효력 정지시키는 힘은 법률을 만들어내는 동등한 힘을 가진 의회에만 부여된다고 정하였지만, 나폴레옹 3세에 이르러 다시 계엄 상태의 선포 권한은 국가 원수에게 부여된다.

이러한 방식의 끊임없는 예외상태의 선포는 프랑스에서뿐만 아니라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 세계에 만연한 것이 된다. 아감벤은 “행정부의 법령을 통한 예외적인 입법화(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친숙한)가 유럽 민주주의에서 통상적인 일이 된 것은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Agamben, 2009a: 32). 입법부의 권한이 지속적으로 행정부로 위임되었던 이 시기를 거치면서 행정부의 입법기관화는 종전 후에도 계속되었다. 더 나아가 국가의 안보 위협 문제는 더 이상 군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그와 관련된 법령들을 선포할 수 있는 행정부의 권한은 계속 확대되었다. 아감벤은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일어난 이러한 변화가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독재 체제를 탄생하게 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두 나라의 독재 체제가 세계 대전과 함께 끝난 뒤에도 프랑스의 헌법은 여전히 이 예외상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화국의 제도,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또는 국제협약의 집행이 중대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위협받으며, 헌법에 의한 공권력의 정상적인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에 대통령은 총리, 양원 의장, 헌법위원회 위원장과 공식협의를 거친 후 당면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프랑스 헌법」).

이러한 프랑스 헌법 제16조는 히틀러가 권좌에 오르기 전 독일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바이마르 헌법 제48조 역시 “독일 국내에서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는 공화국대통령은 공공의 안전 및 질서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신의 자유, 의견표명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소유권과 같은 기본권들이 효력 정지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고문현, 2014: 379).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바이마르에서 이루어진 끊임없는 의회의 해산은 나치당의 부상과 막대한 전쟁배상금이라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완전히 예외상태 체제로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아감벤은 “‘민주주의의 수호’란 민주주의와는 무관하며, 입헌 독재 패러다임이라는 오히려 불가피하게 전체주의 체제로 향하는 전환 국면으로 기능” 하게 된다고 지적한다(Agamben, 2009a: 37).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나치독일이 붕괴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비상사태는 더 이상 외부적이고 잠정적인 실제적 위협 상태를 가리키지 않으며, 법적 규칙 자체와 뒤섞이게 되었다”(Agamben, 2008: 318).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도입되는 이러한 예외상태의 선포가 상례가 되어 정상적인 입법화를 위한 과정과 같이 되어버리는 일 또한 일어나게 되는데,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한 이탈리아의 모로법과 같은 것이 제정되는 방식이 바로 그러했다. 알도 모로 전총리의 납치 암살 사건으로 인해 제정된 이 법은 테러 목적 또는 민주적 질서에 반하는 납치 행위에 대해 30년 징역형, 인질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종신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공범에 대해 증언하거나 피해자 구출을 돕는 테러범들에 대한 처벌은 감면할 수 있게 하기도 했다. 그런데 모로법은 이러한 처벌과 관련된 법률만을 제정한 것이 아니었다. 테러리스트들의 은신처를 찾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 1개월 이상의 부동산 임대 또는 매매 계약을 지방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임대인은 계약 사실과 더불어 부동산의 정확한 위치와 구매자 또는 임차인의 신원 정보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단지 행정 권력이 선포한 법령을 인가하는 것뿐이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인 권력 분립이 더 이상 유지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이름 아래에서 끝없는 권한 이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아감벤은 테러리즘의 확대와 이러한 ‘민주주의의 수호’ 라는 목표 아래에서 일어난 행정 권력의 확대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서구의 정치 문화를 민주주의라는 형태로 다른 문화화 전통들에 전파하려는 바로 그 순간 민주주의를 위한 원칙을 철저히 저버렸다는 사실을 서양의 정치 문화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Agamben, 2009a: 42). 9·11 테러 이후 부시 대통령이 취한 조치들은 이러한 서구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군 최고 사령관’ 임을 자임했으며, 법원의 영장 없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애국가법’ 을 통과시키고, ‘테러와의 전쟁’ 을 시작했다. “부시는 긴급 사태가 평시가 되는 상황 그리고 평화와 전쟁(나아가 대외 전쟁과 전 지구적 내전) 사이의 구분이 불가능한 상황을 창출하려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gamben, 2009a: 50). 그러므로 대통령의 주권적 권한 자체가 본질적으로 전쟁상태와 관련된 비상사태에 기반을 둔다고 말해야 하며, 이것이 대통령의 정치적 어휘에서 전쟁이라는 은유가 빠지지 않는 이유이다. 입법적 권한을 장악한 주권 권력은 국내에서는 예외상태를 선포함으로써, 국외로는 국제법을 무시함으로써 법의 규범적 측면을 실제로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법을 적용하는 척 하고 있다” (Agamben, 2009a: 164).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전쟁상태의 선언이며, 이는 이제 하나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가 처해 있는 테러리즘과의 전쟁 상태에 대한 선언이라는 방식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이 아감벤이 현대의 국가를 ‘전 지구적 내전’ 상태라고 규정하고, 이로 인해 예외상태가 더 이상 잠정적인 조치가 아니라 통치술로 전환되었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IV. 홉스의 『리바이어던』 과 전쟁이라는 은유

이렇게 아감벤은 조예와 비오스가 구분 불가능해지는 경계영역에 대해 말하면서, 세계가 공통의 집이 되어간다는 것은 그러한 경계영역의 끝없는 확대를 의미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리

고 주권자는 전쟁이라는 은유를 사용하여 그러한 경계영역에 놓인 생명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된다. 이 때문에 아감벤은 고대 로마에서 공동체로부터 배제당한 자로서 그를 죽이는 것을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았던 ‘호모 사케르’를 끝없이 확대되어가는 경계영역의 생명으로 말하고, 그 반대 극에 놓인 형상이 주권자라고 말한다. “주권자와 호모 사케르는 법질서의 양극단에 위치한 두 가지 대칭적인 형상들로서,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서로 결합되어 있다”(Agamben, 2008: 179). 호모 사케르가 공동체로부터 배제됨으로써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포함되는 것처럼, 주권자는 예외를 선포한 자신을 그 예외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스스로를 예외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질서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주권자의 형상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다. 아브라함 보스가 그린 『리바이어던』의 표지에 등장하는 국가-인간의 형상은 도시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거주하고 있다. 아감벤은 스스로를 예외로 규정하는 주권적 구조에 대하여 “주권자는 법질서의 외부와 내부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하는데, 이 형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리바이어던의 형상인 것이다(Agamben, 2008: 55).

그렇다면 『리바이어던』 표지의 국가-인간 형상은 작은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작은 인간들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작은 인간들이 사회계약을 통해 주권자라는 하나의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사회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도 그들은 계속 주권자로 남아 있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주권자는 아무도 없는 도시를 지배하는가? 아감벤은 홉스의 답을 그의 『시민론』에서 찾는다. 홉스는 『시민론』의 ‘국가를 해체시킬 경향이 있는 내부적 원인들에 관하여’ 장에서 ‘최고 통치권을 가진 사람들이 실정법에 종속된다는 주장’이나 ‘최고통치권이 분할될 수 있다는 주장’ 등에 대해 선동적인 의견이라고 말하면서, 인민(populus, 또는 민중(demos))과 다중(multitudo, 또는 군중(plethos))을 구분하지 않으면 그러한 의견 역시 선동적인 의견이 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인민은 단일한 의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군주정이든 민주정이든 귀족정이든 그 의지를 통해 통치한다. 그러나 다중은 단일한 의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늘 지배받는 시민으로 남아 있으며, 군주정의 형태에서는 군주가, 귀족정과 민주정의 형태에서는 평의회가 인민이다. 군주가 인민이라는 역설이 탄생하는 것이다. 홉스에 따르면 이 인민과 다중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할 때 선동이 일어난다. 홉스에게 선동은 “인민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은 체제에 불만을 품고 응얼거리는 신민들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방식으로 인민과 다중을 동일시하여, 다중으로 하여금 인민에 맞서게 하는, 즉 시민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항하도록 하는 것이다(Hobbes, 2013, 209).

이렇게 홉스에게 다중의 지위는 명백하다. 그에 따르면 인민은 주권자를 선택하는 그 순간 다중으로 해체되어야 한다. “통치권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순간 인민은 더 이상 인격(person)이 아니며, 인격이 퇴색하므로 인격에 따른 책임도 모두 퇴색한다. 그러므로 신민은 군주에게 복종할 책임이 있다”(Hobbes, 2013, 145). 인민은 오직 한 순간에만 존재하며 곧바로 복종의 의무만을 가지는 다중으로 해체되는 것이다. 인민은 국가-인간의 형상으로 항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어떤 체제에서든지 대의적으로만 있을 수 있으며 그 자체로서는 결코 현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가 이루어진 뒤, 즉 인민이 다중으로 해체된 뒤에는 주권자를 폐위하거나 불복종하거나 다른 주권자와 계약을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 홉스에 따르면 “다수에 의해 선

포된 주권의 설립에 항의하는 것은 불의이다. 그것은 스스로 체결한 신의계약에 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명령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이전의 전쟁상태에 그대로 있는지 해야 한다”(Hobbes, 2008: 239). 아감벤은 이 최초의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상태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바로 내전과 일치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주권의 형상으로서 도시 바깥에 머무는, 더 나아가 그 자체로서는 결코 현존할 수 없는 인민이 아니라 오직 다중만이 도시 안에 유일하게 존재한다면, 이는 “내전이 국가에서는 항상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Agamben, 2017: 87). 국가는 언제나 내전의 가능성과 공존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내전은 정치의 구성요소로서 항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자를 통해 전쟁이 은유가 되고, 그에 따라 인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과의 내전 또는 테러리즘과의 전쟁은 민주주의의 수호와 동일시된다. “홉스가 보기에는 자연 상태와 폭력(‘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homo hominis lupus’)의 이러한 동일성 자체가 주권자의 절대 권력을 정당화시켜준다. (...) 자연 상태는 그 본래의 ‘만인에 반하는 법(ius contra omnes)’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인 주권자의 인격 속에서 살아남는다”(Agamben, 2008: 93-94). 이렇게 자연 상태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자연 상태가 법질서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에 잠재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감벤에게 있어서 잠재성은 주권자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잠재성의 이러한 구조는 자신을 [예외에] 적용시키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예외에 적용시키는 주권적 추방령의 구조에 상응하는 것”이다(Agamben, 2008: 113). 예외상태를 선포하는 주권자가 법질서의 외부와 내부에 동시에 있는 것처럼 잠재성은 현실화되는 것들의 바깥에서 그 자신을 예외로 적용함으로써 현실화 자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감벤이 “자연 상태는 진정으로 노모스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잠재성(virtualita)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때, 이는 자연 상태, 즉 내전의 가능성이 법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늘 항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Agamben, 2008: 94). 이러한 외부에 있다고 전제되었던 자연 상태가 내부에 재등장하게 되는 것이 예외상태이며, 이 외부와 내부의 구분 불가능한 경계 영역에 내전과 이를 선포하는 주권자가 있다. 아감벤이 말하는 예외가 규칙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예외가 점차 확대되면서 이 경계 영역이 끝도 없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 지구적 내전’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 있듯이 이러한 주권자와 호모 사케르는 대칭적인 형상들이다. 주권자가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호모 사케르 역시 동일한 추방령의 구조 속에 있다. 그러므로 홉스가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고 자연 상태에 대해 말할 때 이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구분 불가능한 형상을 의미하며, 도시 바깥에서 리바이어던을 이루는 인민이 아닌 자들, 도시 안에 남아 있는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자들과 조용한다. 이들은 조에도 비오스도 아닌 자, 그 경계영역에 있는 호모 사케르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늑대화와 늑대의 인간화는 예외상태에서는, 국가의 분해 상태(dissolutio civitatis)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Agamben, 2008: 216). 그리고 예외상태는 법질서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존하는 것이며,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감벤은 예외의 끊임없는 확대를 의미하는 조예의 비오스화의 방식, 즉 그럼으로써 조예를 말살하는 데 이르는 우리 시대의 방식이나, 철저히 조예와 비오스를 구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예와 비오스가 완전히 일치하게 되

는 마르크스적 의미에서 ‘계급 없는 사회’에 이르러야 “비로소 종결되는 내전”을 말한다 (Agamben, 2008: 336). 이는 분열되지 않는 인민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끊임없는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치즘의 “‘절멸 작전’ …은 독일 민족을 결국 근원적인 생명정치적 분열을 극복한 인민으로 만들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Agamben, 2008: 338). 분열되지 않는 인민의 창출은 배제당한 다중을 제거함으로써만 극복되며, 이것이 나치 지도자들이 유럽을 위해 유대인들과 집시들을 제거했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성장을 통해 불우한 계급을 제거하려는 민주주의적-자본주의적 방식과 다르면서도 유사하다. 그래서 아감벤은 이렇게 말한다. “오직 서양의 근본적인 생명정치적 분열을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만이 이러한 진동을 멈추고, 지구상의 인민들과 국가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내전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다” (Agamben, 2008: 339) 전 지구적 내전으로서의 전쟁이 은유로서 ‘통합’을 위해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분열’로서 내전을 자신의 요소로 가지는 정치가 가능해야만 하는 것이다.

V. 예외상태와 무위의 공동체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아감벤에 따르면 어떤 방식으로든 예외 상태를 법질서에 기입한다는 것은 결국 주권자와 호모 사케르라는 두 쌍을 늘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외 상태를 선포하는 권력을 완전히 법질서의 바깥에 두며, 법 자체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에만 조예와 비오스가 일치하는 영역에서 생명이 주권자의 결정에 내맡겨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법의 형태를, 즉 효력이 정지된 채로 있는 법의 형상, 즉 계급 없는 사회에서의 법의 형상을 아감벤은 카프카의 「신임 변호사」에 대한 벤야민의 해석으로부터 찾는다. 카프카의 「신임 변호사」에서 부세팔루스는 알렉산드로스의 군마였으나 이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없이 “법률서에 침잠하는” 신임 변호사이다 (Kafka, 2015: 148). 세 단락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소설은 다음과 같이 끝난다. “그는 자유롭게, 말 탄자의 허벅지에 옆구리를 늘리는 일 없이, 조용한 등불 아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싸우는 전장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채, 우리의 오래된 책장들을 읽고 넘긴다” (Kafka, 2015: 148). 이 부세팔루스의 법이 “더는 실행되지 않고 단지 연구만 될 뿐인 법”이다 (Benjamin, 2020: 110). 벤야민은 변호사회가 대체로 입회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세팔루스는 변호사로 개업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면서, 이 효력 없는 법이 바로 ‘정의로 가는 문’이라고 말한다. 아감벤은 이로부터 정의로 가는 길이 “법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법에서 활력을 빼앗고 작동을 멈추게 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Agamben, 2009a: 123). 이는 아감벤이 말하는 무위의 통치에 이르는 길이다. “언젠가 인류는 마치 어린 아이가 쓸모없는 물건들을 갖고 노는 것처럼 법을 갖고 놀 것이다. 이는 법을 경전에 따라 사용하는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런 사용에서 법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이다” (Agamben, 2009a: 124).

아감벤은 『왕국과 영광』에서 무위의 통치를 원탁의 기사 전설에 등장하는 어부왕에 비유한 바 있다. 어부왕은 허벅지에 큰 부상을 당해 절름발이이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채로 황폐한 땅을 다스린다.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주권자는 이러한 정당성을 지녔으면서도 실질적인 통치와 분리되어 있는 왕이다. 아감벤은 어부왕처럼 신 또한 권능과 그 권능의 행사가 구별되어 있다고 말한다. 신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에 따라 행할 수는 없다. 군림하는 자로서 신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 통치자로서의 신의 능력은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은 절대적 능력으로 자기가 행할 것으로 미리 알고 미리 정한 것들과는 다른 것들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하느님이 자기가 행할 것으로 미리 알지 못하고 또 미리 배정하지도 않은 것들을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Agamben, 2016: 235). 신은 그의 권능이라는 형식 아래에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자이지만 자신의 선한 의지와 지혜에 반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신의 권능과 통치는 분리되는데, 이 분리가 통치의 대상인 세계에서 자유의지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는 단지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할 뿐 아니라 신의 은총 또한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신은 그 자신의 권능을 위해서 통치의 힘을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통치의 힘은 무능이다. “세계가 확실히 통치되기 위해 하느님은 무능해야만 한다” (Agamben, 2016: 237). 신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이성적인 피조물을 창조했다면 이 세계에는 은총이 전혀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세계는 역설적으로 신에 의해 확실히 통치되기 위해 무능한 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위의 통치 아래에서 백성 역시 자신의 근본적인 무위로 돌아간다. 바울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하느님의 안식처에 들어간 이도 그의 일손을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Agamben, 2016: 490). 아감벤은 이러한 무위가 인간에게 근본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서술한 바 있는 것이다. “목수와 제화공은 어떤 기능과 행위들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아무런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본래 아무 할 일도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 (Aristotle, 2011: 29)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인간에게만 고유한 영혼의 ‘활동’이라는 방식으로 유위로서의 답을 내놓지만, 아감벤은 이로부터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정할 수 있는 직업이나 기능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위임을 밝힌다. 이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 슬픔이 있는 사람은 슬픔이 없는 사람처럼 지내고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은 기쁜 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물건을 산 사람은 그 물건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과 거래를 하는 사람은 세상과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Agamben, 2016: 506).

이는 “모든 법적 조건과 모든 사회적 행동을 현재 시점에서 유지하는 동시에 무위의 것으로” 만드는 방식이다(Agamben, 2016: 506). 미리 규정된 일정한 형식과 일치하는 모든 형태의

삶을 무위로 돌려보내는 유위는 단순한 무기력이나 노동 뒤의 휴식과 같은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무위는 행동하거나 무엇을 하는 모든 특수한 잠재성을 무위적인 것으로 만드는 독특한 ‘실천’이다”(Agamben, 2016: 511). 아감벤에게 잠재성은 외부에 있으면서도 내부에 있는 주권적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잠재성은 현실성 외부에 잠재적인 것으로 자신을 남겨둠으로써 모든 현실화되는 것들을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모든 현실화되거나 현실화되는 것에 비추어 특수화되는 것들을 무위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 근본적인 잠재성으로 모든 것들을 돌려보내는 실천이다.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 비오스와 비오스로부터 구분되는 조에라는 특정한 관점들에 포섭된 방식으로 생명을 이해하는 방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위의 실천이 요구된다. “이러한 무위성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란 단지 우리가 그로 인해 살아가는 삶일 뿐이다. 단지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잠재성, 행위할 수 있는 ‘가능성’, 살아갈 수 있을 가능성일 뿐이다. 여기서 비오스는 조에와 남김없이 일치한다”(Agamben, 2016: 5112). 이러한 잠재성으로서의 생명은 어떤 정체성으로도 고갈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에의 비오스화라는 방식으로 일치를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조에의 비오스화는 대표적으로 ‘인권’이라는 조에로부터 곧바로 비오스를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감벤에 따르면 인권선언은 “자연 생명이 국민 국가의 법적·정치적 질서 속에 기입되는” 것일 뿐이다(Agamben, 2008: 249). 인권선언은 출생으로부터 국민주권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출생과 국민 사이에 어떤 간극도 없다는 허구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에와 비오스화된 조에 사이의 완전한 동일성이라는 허구에 기반을 둘 때 자연 생명으로서의 조에는 끊임없이 배제됨으로써만 포함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가장 극대화된 공간이 수용소이다. 수용소는 조에가 주권자의 결정에 완전히 내맡겨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주권자의 결정은 외부와 내부, 배제와 포함, 노모스와 푸지스 사이의 비식별역을 구획 짓고 종종 이를 갱신하는데, 그러한 영역에서 생명이란 본래 법속에서 배제된 것이다”(Agamben, 2008: 77). 잠재성으로 돌아가는 일은 조에와 비오스 사이의 허구적인 일치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권자의 결정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도록 만드는 이러한 끊임없는 배제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잠재성을 소유하는 일은 우리의 근본적인 역량을 소유하는 일일 뿐 아니라 “비국가적인 정치의 가능성”을 위해 나아가는 일이다(Agamben, 2009b: 20). 아감벤은 이러한 방식으로 “항상 이미 현실태일 뿐인 존재들, 그것들에 완전히 자신의 역량을 탕진해버린 존재들 사이에서는 어떤 공동체도 있을 수 없으며, 그저 일치나 사실적인 구분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잠재적인 공동체, 즉 무위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Agamben, 2009b: 21). “만일 인간들이 이런 저런 개별적 생의 기록 속에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그’ 이렇게로 존재하며, 자신들의 특이한 외부성과 자신들의 얼굴로 존재할 수 있다면, 인류는 최초로 주체도 전제도 없는 공동체에 들어서게 되며, 소통될 수 없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어떤 소통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Agamben, 2014: 92).

VI. 결론

출생과 국민이 일치되지 않는 생명에 대해 증명하고 있는 존재들은 난민이다. 아감벤은 “실제로 제1차세계대전 이후로는 출생-국민의 결합 관계가 국민-국가 내부에서 더 이상 정당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으며, 이 두 용어는 돌이킬 수 없게 서로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라고 말한다(Agamben, 2008: 256). 제1차세계대전과 러시아 내전, 튀르키예 독립전쟁 등으로 인하여 유럽에서 난민과 무국적자들이 급증했고, 인권선언이 전제하고 있는 출생과 국적의 연속성은 허구적인 것이 되었다. “단기간에 150만 명의 백러시아인, 7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 50만 명의 불가리아인, 100만 명의 그리스인, 그리고 수십만 명의 독일인, 헝가리인 및 루마니아인들이 자기 나라를 떠났다” (Agamben, 2008: 256). 이에 대해 유럽 국가들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오히려 국적 박탈과 귀화 철회를 위한 공식 절차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시민권 박탈을 처음 입법화한 사례는 제1차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에서 찾을 수 있는데, 프랑스는 1915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시민들이 반국가적 행위에 연루되었을 때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했다. 이는 1913년 독일이 델브룩법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독일인들에게 독일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전쟁의 와중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 혼란이 올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조치는 1926년 이탈리아에서 반복되었는데, 파시스트 정권은 범죄가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탈리아 국적을 취득한 시민이 합당하지 않은 정치적 행위를 할 때 국적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1927년 “이탈리아 민족은 목적과 삶, 그리고 수단을 가진 유기체로서 그 능력과 지속성에서 민족의 구성 요소인 개인과 집단보다 우위에 있다” 로 시작하는 이탈리아 「노동현장」과 그 정신을 공유하는 것이었다(김용우, 2019: 63). 잘 알려져 있듯이 무솔리니는 히틀러의 영향 아래에서 이탈리아 법적 전통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아리아 인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도 하였으며, 이때 유대계 이탈리아 시민은 허가 없이 다른 인종의 시민이나 외국인과 결혼도 할 수 없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회사를 경영할 수도 없었으며,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들은 이탈리아 시민권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국가 시민만이 국가시민법에 상응하여 모든 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국가 내무부 장관은 총통의 대리인과 국가 법무부 장관과의 협조 하에 국가시민법의 실행과 완성을 위해 요구되는 법적이면서도 행정적인 규제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나치독일의 뉘른베르크법과 동일했던 이 법률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최종해결책’이라는 귀결로 나아간다.

아감벤은 이로부터 인권 선언이 그 토대로 삼았던 출생과 국민의 연결 관계가 제1차세계대전 이후에는 일체의 기능과 자기 조절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도 인권은 시민권이라는 좁은 권리의 문제를 환기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소환되고 그 토대로서의 기능을 되찾고자 하지만, UN과 같은 기구들이 인도적이고 사회적인 임무만을 수행하는 ‘비정치적인’

기구인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난민 문제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데 무능한 채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아감벤은 인권이라는 더 큰 범주 아래에서 난민들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난민이라는 존재에 이러저러한 법에 기입된 권리와 관련된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는 아렌트가 이미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아렌트는 「우리 난민들」이라는 글에서 이제 난민이 평범한 이주민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에서 난민을 위한 협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이 글에서 150% 독일인이었고, 150% 오스트리아인이었고, 150% 프랑스인이었던 유대인 콘(Mr. Cohn)이라는 사람에 대해 말한다. 그는 1933년 프라하로 이주했고 1937년 추방되기까지 거기서 충실한 체코인으로 살았으며,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애국자가 되었으나 독일은 또 다시 오스트리아를 점령했다. 프랑스로 건너간 콘은 역시 그들의 영웅을 자신의 영웅으로 삼았다. 아렌트는 이러한 인물에 대해 말하면서 이러한 콘의 변화는 무한한 인간 실존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유대인이지만 않기를 바라는 광적인 욕망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음을 쓰라리게 지적한다. 그리고 모든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새로운 국적에 동화되지 않고,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던 하인리히 하이네, 라헬 파른하겐, 솔렘 알레이헴, 베르나르 라자레, 프란츠 카프카, 그리고 찰리 채플린에 이르는 목록을 열거하면서 난민이 난민으로서의 지위로 남아 있을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이들에게 역사는 더 이상 덮인 책이 아니며, 정치도 더 이상 비유대인들의 특권이 아니게 된다. 그들은 유럽에서 유대 민족이 추방된 뒤 곧바로 유럽 민족들 대부분의 추방이 이어졌음을 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쫓겨난 난민들은 그네들의 민족의 전위를 대표한다” (Agamben, 2009b: 25). 이러한 난민들의 공동체는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규정되는 공동체를 이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감벤이 말하는 무위의 공동체이다. 분열되지 않는 인민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민인 것이다. 아렌트는 위 글을 유럽의 민족 공동체가 가장 약한 구성원들을 배제하고 처형시킬 때 와해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마친다. 끊임없는 배제는 와해를 극복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주권자들의 은유가 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진정한 공동체는 시민들이 스스로를 난민으로 인정함으로써만, 분열을, 즉 내전을 정치의 구성 요소로서 사유함으로써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를 과연 현실화할 수 있는가? 이러한 공동체가 어디까지나 잠재적 공동체이며, 현실화 불가능한 공동체라면 그것은 공허한 이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문제는 잠재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유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아감벤에 따르면 잠재성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처럼 시간상으로 먼저 오는 것처럼 보여도 현실성에 결코 앞설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잠재성은 그 자신이 현실화되기를 유보했을 때 현실화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다. 그러므로 모든 현실적인 것들을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힘으로서 잠재성을 그 자체로 드러내는 일은 공허하거나 무력한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힘을 가진다. 이는 기존의 어떤 방식으로든 공동체를 규정하려고 하는 시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며, 모든 현실화된 권력들을 잠재성으로 되돌려 보내는 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잠재적인 공동체로서 이러한 난민들의 공동체를 사유하는 일은 공허한 이상에 머물지 않으며, 현실의 공동체들에 균열을 가하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아감벤이 내전 개념과 함께 무위의 공동체를 사유하는 이유이며,

어떤 현실화된 내전을 옹호하지 않으면서도 내전 개념을 말할 수 있는 이유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데리다의 말처럼 정당화하지 않으면서도 개념을 사유하고 이해하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철학자의 역할인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선형, 2014,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와 아감벤의 생명정치」, 『철학논총』, 78: 129-148.
- 강선형, 2021, 「아감벤의 잠재성과 무위」, 『서강인문논총』, 62: 169-192.
- 고문현, 2014, 「독일의 비상사태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66: 377-402.
- 권형진, 2017, 「국적법 제도 속에 나타난 ‘독일국민’의 법적 개념 변화」, 『독일연구』, 135: 5-51.
- 김용우, 2019, 「이탈리아 파시스트 조합주의와 유라프리카 연합」, 『통합유럽연구』 10(1): 51-76.
- 김 항, 2018, 「내전과 현대 민주주의의 상황: 슈미트의 『리바이어던』 해석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6: 7-40.
- 김 항, 2011, 「절대적 계몽, 혹은 무위의 인간: 아감벤 정치철학의 현재성」, 『사회와 철학』, 21: 269-302.
- 발터 벤야민, 2020, 최성만 옮김, 『카프카와 현대』, 길.
- 서동욱, 2020, 「아감벤 정치 철학의 존재론적 기원: 퀴드리벳 엔스에 관한 한 해석」, 『철학논집』, 62: 135-158.
- 서동욱, 2022, 『타자철학』, 반비.
- 아리스토텔레스, 2023, 김재홍 옮김, 『정치학』, 그린비.
- 아리스토텔레스, 2002, 최자영 · 최혜영 옮김, 「아테네 정치제도사」, 『고대 그리스정치사 사료』, 신서원.
- 아리스토텔레스, 2011, 강상진 · 김재홍 · 이창우 옮김, 『니코마코스 윤리학』, 길.
- 양창렬, 2006, 「아감벤의 잠재성 개념에 대하여: (무)능력의 아포리아」, 『오늘의 문예비평』, 60: 217-233.
- 유홍림 · 홍철기, 2007, 「조르지오 아감벤(Giorgio Agamben)의 포스트모던 정치철학: 주권, 혈벗은 삶, 그리고 잠재성의 정치」, 『정치사상연구』, 13(2): 155-182.
- 이준호, 2018, 「홉스의 『시민론』과 『인간론』을 중심으로 본 인권과 전쟁의 권리」, 『근대철학』, 12: 5-33.
- 자크 데리다, 2004, 손철성 · 김은주 · 김준성 옮김, 『테러 시대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 조르조 아감벤, 2014, 이경진 옮김, 『도래하는 공동체』, 꾸리에북스; 1993, trans. M. Hardt, *The Coming Community*,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조르조 아감벤, 2008,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1998, trans. D. Heller-Roazen,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조르조 아감벤, 2009a, 김항 옮김, 『예외상태』, 새물결; 2005, trans. K. Attell, *State of Excepti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조르조 아감벤, 2009b, 김상운 · 양창렬 옮김, 『목적없는 수단』, 난장; 2000, trans. V. Binetti/C. Casarino, *Means Without End: Notes on Politics*,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조르조 아감벤, 2016, 박진우 · 정문영 옮김, 『왕국과 영광: 오이코노미아와 통치의 신학적 계보학을 위하여』, 새물결; 2011, trans. L. Chiesa/M. Mandarini, *The Kingdom and the Glory: For a Theological Genealogy of Economy and Government*,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조르조 아감벤, 2017, 조형준 옮김, 『내전』, 새물결; 2015, trans. N. Heron, *Stasis: Civil War as a Political Paradigm*,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진태원, 2013, 「무정부주의적 시민성? 한나 아렌트, 자크 랑시에르, 에티엔 발리바르」, 『서강인문논총』, 37:

47-85.

- 토마스 홉스, 2013, 이준호 옮김, 『시민론: 정부와 사회에 관한 철학적 기초』, 서광사; 1998, eds. R. Tuck/M. Silverthorne, *On the Citiz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토마스 홉스, 2008, 진석용 옮김, 『리바이어던 1: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 나남; 2010, ed. I. Shapiro, *Leviathan: Or The Matter, Forme,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l and Civill*,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프란츠 카프카, 2015, 김태환 옮김, 「신임 변호사」, 『변신 · 선고 외』, 을유문화사.
- 플라톤, 2005, 박종현 옮김, 『국가 · 정체』, 서광사.
- 플라톤, 2018, 김남두 외 옮김, 『법률』, 나남.
- Agamben, G., 1999, ed./trans. D. Heller-Roazen, *Potentialities: Collected Essays in Philosoph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Arendt, H., 1943, “We Refugees”, *The Menorah Journal*, 31(1): 69-77.
-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프랑스 헌법」,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l=1&searchPageRowCnt=10&A=A&AST_SEQ=1286&CTS_SEQ=38123&searchType=all&pageIndex=81&ETC=807.(검색일: 2023.08.11.)

Agamben's Concept of 'Stasis' as an Element of Politics

Kang, Sunhyu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Subject Contemporary Philosophy, Social Philosophy, Political Philosophy

Key words Agamben, Stasis, Civil War, Homo Sacer, State of Exception, Multitudo, Inoperative Community

Summary This paper examines Agamben's conception of 'Stasis'(civil war) as a fundamental element of politics, placing it in the context of the state of exception. It explores how Agamben strives to connect with the inoperative community through the concept of civil war. In this analysis, it becomes evident that the concept of civil war can be understood as a crucial component of contemporary politics without endorsing real-life civil conflicts, terrorism, or violence. Civil war functions metaphorically as a tool for the sovereign to declare a state of exception, granting the power to perpetually maintain such a status. However, this declaration is always aimed at creating an operative community, reminiscent of the ideal envisioned by Nazism: a unified People overcoming internal divisions. Conversely, viewing civil war as a foundational element of politics leads us to consider an inoperative community—a community in constant division, lacking a fixed identity, akin to the refugee communities described by Arendt. This paper asserts that Agamben's exploration of new communities encourages contemplation of civil war as a fundamental element, devoid of the endorsement of actualized violence.

접 수 일 : 2023년 10월 16일

심사완료일 : 2023년 10월 31일

게재확정일 : 2023년 11월 5일